

<의안번호 제2006- 75호>

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12. 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. 12. 7.

2. 개정이유

-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
- 현재 추진중인 출산장려 정책에 「산전진찰비 지원사업」을 추가함으로써 출산분위기를 조성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제3조 지원내용에 있어 현행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,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, 임부 철분제 지원 및 출생아 출산용품지원 사업에 산전진찰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3조).
- 산전 진찰비 : 임부기초검사, 초음파,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등

4. 참고사항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
- 예산조치 : '07년 예산반영(20,000천원)
- 입법예고(2006. 11. 10 ~ 11. 29) 결과 : 의견제출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출산율 1.08명(경남 : 1.18, 거창군 1.12)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급격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정책에 「산전진찰비 지원사업」을 추가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조례안이 개정되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가 됨.
-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
 - 제2조(정의)에서 ‘산전진찰비’라 함은 산전진찰시 소요된 비용인 임부 기초검사, 초음파, 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정의한 것으로 이는 추후 논란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 - 제3조(지원내용)에서 출산용품 지원은 둘째이상 자녀에 대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표기가 잘못 된 부분을 금번 조례 개정시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한 것이고,
 - 제4조(지원대상자의 자격)에서 대폭 수정한 사항은 현재의 조례부분에서 부적절하게 표현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재정리한 것이며,
 - 제5조(지원규모 및 방법)에서 산전진찰료 지원의 규모는 10만원 이내로 한 것은 거창군의 재정여력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,
 - ※ 임부 산전 진찰내용별(초음파, 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, 임부기초검사 등) 진찰회수 및 지원의 규모 10만원 이내로 산정한 배경에 대한 설명요함.
 - 제6조(신청 및 지급절차)에서 수정한 사항은 산전진찰료 지원에 따른 후속적인 절차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됨
- 이밖에도 동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 행위나 상위법 저촉사항 등에 대하여는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